

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

□ 법적 근거

-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)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(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
□ 세부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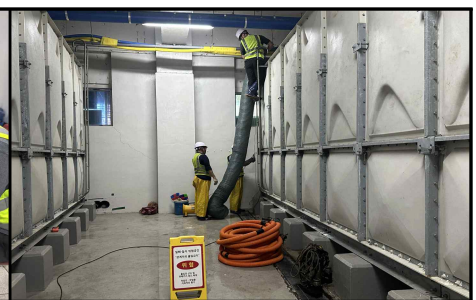
- 일 시 : 2025. 11. 24.(월), 09:00 ~ 17:00
- 장 소 : 물탱크실 1층(저수조 2개소), 5층(고가수조 2개소)
- 내 용
 - 공단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작업에 대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실시
 -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, 보호구 착용 등 안전작업에 대한 지도
- 참석자 (5명)
 - 창원레포트파크(2명) : 고재성 대리 / 임현주 주임
 - 작업자(3명) : 도와환경(용역업체) 구현우, 이명제, 오민석
- 관련 사진



밀폐공간 프로그램 교육



환기팬 설치



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


저수조 청소

